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4. 11. 12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새로운 영등포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우리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 요 골 자

-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안 제3조 내지 제4조)
- 뉴타운 및 균형발전 사업지구 지정 요청 (안 제5조 내지 제6조)
- 뉴타운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안 제7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안 제8조)
- 기타의 균형발전 사업지원 (안 제9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안 제11조 내지 제17조)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1개소)

□ 검토 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보면

- 우리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균형발전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함으로써 절차상 민주성을 확보하고 우리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 본 조례 구성을 보면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절차적 민주성의 보완, 행정, 재정상의 지원,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개발유도를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수 있다 사료되며
- 구시가지역인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보이며 조례제정의 형식에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12. 9

보고자 : 이 남 식